

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9. 4. 11. 제 천 시 장
- 회 부 일 : 2009. 4. 16.
- 상 정 일 : 2009. 4. 22.(제15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교통과장 이근덕)

가. 제안이유

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(특별교통수단)에 따라 이동에
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특별
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, 이용 촉진을 위해 민간위탁
운영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위탁물건(차량) 현황

- 차 량 명 : 특별교통수단 (일명 “장애인콜밴”)
- 차 종 : 스타렉스(휠체어 자동 승하차 설비를 갖춘 승용자동차)
- 차량가액 : 대당 35,000천원 정도
- 도입계획 : 2009년도 예산에 총 6대 구입예산이 세워져 있으며,
우선 2대를 시범적으로 구입·운영 후 사업 확대 예정임.
- 이용대상 : 관내 1,2급 장애인, 65세 이상 노인 중 버스이용 불편자 등
- 운행지역 : 제천시 전역 및 인근지역 (충주, 원주, 단양, 영월 등)
- 사용요금 : 일반택시(중형)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

○ 수탁자 선정기준

- 제천시에 주사무소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단체(협회)로서 이동지원
센터(콜센터) 장비 및 시설(건물, 통신수단)을 갖춘 단체

○ 위탁기간

- 3년 이내로 하되, 재 위탁 가능

○ 운영비 지원 : 시설·장비유지비 및 운영비 전반

- 차량 및 장비

- 콜승합차(특장차) 구입 후 수탁기관 위탁

- 운 영 비

- 인건비, 유류비, 차량유지비, 보험료, 공공요금 등

- 2009년 예산 □ 48,000천원 반영

3. 전문위원 겸임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광신)

- 본 동의안은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 제16조(특별교통수단)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, 이용 촉진을 위해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「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」 제7조(운영관리)에서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규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 됨.
- 위탁하고자 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제천시 관내 1,2급 장애인, 65세 이상 노인 중 버스이용 불편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
- 우리시는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에 따라 20대 이상의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며, 2009년도에 6대의 구입 예산이 세워져 있으나 우선 2대를 시범적으로 구입·운영 후 사업 확대 예정으로
- 수탁자 선정기준은 제천시에 주사무소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단체 (협회)로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, 재위탁 가능토록 하고 있음.
- 이 동의안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최소한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동권 을 확보함으로써 복지행정 서비스 혜택에 소외됨이 없도록 하고자 민간위탁 운영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.

[참고자료]

1.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요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타시군 대당 1일 6~7회, 청주는 10여회이고, 우리시 경우 수해 대상자가 많지 않으나 6대까지 차량을 확보하는 이유?(김병창 위원)
- 운행지역중 인근지역의 범위는?(최종섭 위원)
- 범인을 수탁자 선정기준에 미포함한 사유와 콜센터, 건물, 통신수단을 갖춘 단체로 한정하는등 수탁대상자 선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(유영화 위원)
- 특별교통수단의 민간위탁에 대한 예상 문제점은 없는지?(김병룡 위원)

나. 답변요지 < 교통과장 이근덕 >

-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20대이상 운영되어야 하며, 2009년도 6대의 예산 확보
- 충주, 원주, 단양, 영월등 제천과 접하는 시군을 포함하여, 기타 다른 지역도 운행가능함.
- 개인택시지부, 장애인협회등으로 한정을 두고자 함이며, 수탁대상자 공고와 협약 추진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위수탁 계획을 수립 하겠음
- 운영 단체에서 제반규정을 어겼을 경우 민원발생등의 가능성이 있음.

5. 소수의견

“ 없 음 ”

6. 토론요지

“ 없 음 ”

7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부. 끝.

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요

□ 관련 법령

○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

- 시장 또는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. (제16조제1항)

○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

-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 (제7조제1항)

□ 운영 개요

○ 차량명

- 특별교통수단(일명 장애인콜밴)

○ 차종

- 스타렉스(휠체어 자동 승하차 설비를 갖춘 승용자동차)

○ 차량가액

- 대당 35백만원 정도

○ 도입계획

- 2009년도 예산에 총 6대 구입예산이 세워져 있으며, 우선 2대를 시범적으로 구입·운영 후 사업 확대 예정임.

○ 이용대상

- 관내 1,2급 장애인, 65세 이상 노인 중 버스이용이 어려운 자 등

○ 운행지역

- 제천시 전역 및 인근지역 (충주, 원주, 단양, 영월 등)

○ 사용요금

- 일반택시(중형) 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

□ 추 진 일 정

- 조례 제정 2009. 2.
- 관련 용역 수행 2009. 3.
- 운영 기본계획 수립 2009. 3.
- 민간위탁 동의(의회) 2009. 4.
- 수탁자 선정 2009. 5.
- 차량 구입 2009. 5.
- 특별교통수단 운영 2009. 6.

□ 타 시군 운영사례

시군별	운영시기	운영방법	수 탁 자 (운영자)	차량대수	이용현황	비 고
원주시	2009	위탁	개인택시 지부	2	대당 1일 5~6회	
공주시	2008	"	장애인협회	1	이용률 저조	
부산시	2006	"	법인택시운 송사업조합	60	대당 1일 6~7회	
청주시	2008	민간 자체운영	지체장애인 협회	2	대당 1일 10여회	
천안시	2004	"	장애인협회	4	"	
진천군	2009	"	장애인협회	2	운영중단	